

#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기금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,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,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변경(안 제8조)

나. 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14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3. 25. ~ 2024. 4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  
- 평창군 공고 제2024-443호, 기획실-4636(2024.3.21.)호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[기획실-4502(2024.3.19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기획실-4502(2024.3.19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0898(2024.3.25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[기획실-6385(2024.4.22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6890(2024.4.30.)호]

평창군조례 제 호

##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2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민간 전문가 4명”을 “민간전문가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2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되고, 위원은 군수가 기금관련 <u>민간전문가 4명</u>을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 단,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제14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민간전문가</u>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존속기한) ----- 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□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- 제15조(수당 등)**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

### [별표 2] 세출예산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

2. 일반운영비(201목)
  - 2-1. 사무관리비(201-01)
    - 다. 운영수당
      - 1) 위원회 참석수당
        -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실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065